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박재익

전화 043-283-9001 / 팩스 0502-193-5201

보도자료

2021. 6. 8.(화)

제 목 아파트 5채를 부정당첨 받은 사범 구속 기소 등 관련자 4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희도)는 학부형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5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이들을 위장 전입 시킨 뒤, 대전 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 받은 **A**를 주택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금품을 받고 A의 범행을 조력한 B등 5명을 인지하여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42세)	'19. 8.경 청주 지역 학부형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등을 상대로 500만 원씩을 주고 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매수하고, 이들을 대전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양가족수 등 가점사항을 부풀려 입력하는 등으로 청약 신청하여 대전 소재 아파트 5채를 당첨 받아 주택법 위반 등	'21. 4. 22. 구속 기소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2	B (44세)	'19. 8.경 A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고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고, 대전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승낙함으로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하여 주택법위반 등	'21. 6. 8. 불구속 기소 (B, C의 배우자 E, F는 기소유예)
3	C (42세)		
4	D (37세)		

* 대상 아파트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66:1에 육박하였음

2 수사 경과

- '20. 12. 18. 사경, A를 주택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
- '21. 4. 22. 검찰, A가 지인 5명에게 금품 제공하며 청약통장 등을 매수한 사실,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대전 지역 농촌의 빈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 등을 밝혀 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 등을 판매하고 위장 전입을 용인한 공범 B등 5명을 인지
- '21. 6. 8. 검찰, B등 5명 조사 후 불구속 기소 등 처분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청주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들에 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음